

학칙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

1. 개정 사유

가. 고등교육법 제6조(학교규칙)

① 학교의 장(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를 말한다)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규칙(이하 "학칙"이라 한다)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.

② 학칙의 기재사항, 제정 및 개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나.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(학칙)

③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이 학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정안 또는 개정안의 사전공고·심의 및 공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.

2. 개정 내용

1) 제 14 조 (수업일수 및 방법)

2) 제 27 조 (이수학점)

3) 제 34 조 (학위청구논문제출 자격)

3. 주요 내용

* 비대면 온라인 수업에 대한 규정 신설

COVID19로 인해 2020년 1학기 수업이 전면 비대면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, 향후 이 같은 일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비대면 온라인 수업에 대한 규정을 추가함.

1) 제 14 조 (수업일수 및 방법) ④총장의 승인을 얻어 교육 과정 중 전체 수업일수의 20% 범위내에서 비대면 온라인 수업을 실시할 수 있다. 또한, 질병의 확산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는 전체 수업을 비대면 온라인 수업으로 실시할 수 있다.

* 석사졸업에 필요한 최소 이수학점 변경

향후 다양한 석사과정 프로그램을 준비하기 위하여, 학생의 수업에 대한 과중한 부담을 줄이고자 대부분의 타 대학에서 규정한 것처럼 졸업에 필요한 최소 이수학점을 50학점에서 30학점으로 변경

2) 제 27 조 (이수학점) 교과이수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원칙적으로 1주 1시간씩 한 학기간 15주 이상 수업을 1학점으로 한다. 졸업에 필요한 최소 이수학점은 석사 30학점, 박사 35학점이상으로 한다.

* 석사학위 청구논문 요건 완화

국제사회의 다양성을 고려한 학생 다변화 및 국제기구학과 석사과정 학생 지원 확대를 위해 기준과 요건을 완화하기 위해 국제기구학과의 석사학위논문 제출요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

3) 제 34 조 (학위청구논문제출 자격) ①석사과정에서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고 대학위원회의 종합평가를 통과한 자는 석사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. 단, 국제기구학과의 경우 그 요건을 완화할 수 있다.

부칙

① (시행일) 본 개정학칙은 2020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4. 공고기간 : 2020. 5. 13 ~ 2020. 5. 17

5. 의견제출 방법

가. 학칙개정의견서를 작성하여 교무처로 제출

나. 제출기한 : 2020. 5. 17까지

※ 학칙 개정 절차

가. 관련근거 : 학칙 제61조(학칙의 신설 및 개정)

총장은 학칙의 신설 및 개정안을 작성하며,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평의원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·시행한 후 이를 교육부 장관에게 보고한다.

나. 개정절차 : 개정의견 제출 및 개정안 작성(교무처) → 공고 및 구성원 의견 수렴(교무처) → 학칙개정 심의안 확정(교무처) → 심의(대학원위원회) → 심의(대학평의원회) → 확정·공포(총장) → 보고(법인 이사회)